

청주지방법원 2021. 4. 9 선고 2019가단37441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동호, 임상순

피고1.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연우

2. C

변론 종결2021. 3. 19.

판결 선고2021. 4. 9.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D과 피고 B 사이에 2019. 3. 2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D과 피고 C 사이에 2019. 4.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청주지방법원 2019. 3. 22. 접수 제3438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C은 청주지방법원 2019. 5. 14. 접수 제5286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 1) 원고는 2018. 5.경 농업회사법인 (주)E(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피보험자: 농업회사법인 F(주), 보험가입금액: 1억 원, 보험기간: 2018. 5. 28.부터 2019. 5. 27.까지(이후 2020. 5. 27.까지로 변경)로 하는 상품판매대금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자였던 D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2) 소외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물품판매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9. 9. 10.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D의 재산처분행위

- 1) D은 2019. 3. 22. 처형인 피고 B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B, 채무자 D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청주지방법원 접수 제3438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 2) D은 2019. 4. 29. 배우자인 피고 C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해 5. 14. 피고 C에게 청주지방법원 접수 제5286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D의 재산상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및 증여 계약 체결 당시 D은 시가 2억 원 상당인 이 사건 아파트를 제외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농업회사법인 F(주)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92,391,481원(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G(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채무 약 140,000,000원, H은행에 대한 대출채무 45,000,000원 등을 비롯하여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미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가 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청주시 흥덕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는 사해행위 당시에 성립되어 있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D에 대한 구상금 연대보증채권은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증여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였지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어 위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증여계약 체결 당시 소외 회사는 이미 피보험자에 대하여 다액의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물품대금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구상금 연대보증채권을 취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로부터 4개월 정도 지난 2019. 8.경 소외 회사가 물품대금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2019. 9. 10.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가 D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 연대보증채권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거나, 타인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 D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증여계약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데도 피고들에게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증여한 행위는 D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 B의 선의 항변

- 1) 피고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D에 대하여 7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위 대여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D으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을 뿐이고, 원고와 D사이의 채권·채무관계, D의 채무초과상태 등을 전혀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 2) D과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 D의 사해의사와 수익자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되고, 수익자인 피고 B이 악의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참조).

을가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D에게 2015. 4. 3. 19,000,000원, 2015. 4. 7. 1,000,000원, 2017. 2. 20. 15,000,000원, 2018. 4. 2. 40,000,000원 합계 75,000,000원을 각 대여하였고, D이 피고 B에게 2017. 4. 17. 5,700,000원을 변제한 사실, D과 피고 C은 2018. 4. 2. 차용인을 D 및 피고 C 공동으로 하여 '2018. 4. 2. 차용금액 70,000,000원을 정히 차용하고 2018. 12. 31.까지 위 차용금 전부를 변제하기로 한다. 이자는 변제일까지 무이자이며 변제일이 24시간 이상 지나면 지연손해금으로 원금의 2배를 지급하기로 하며 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합산금액으로 이자를 월 2부로 지급하기로 한다. 만약 계약이행을 이행하지 못하면 현재 거주지에 근저당권설정을 채권자(B)에게 설정하여 주기로 약속하고 채권자(B)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거주지를 이전해주기로 약속을 한다. 지정자 : C'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결국 위 차용증에서 정한 이행기를 지키지 못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게 된 점, 앞서 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시점 및 그 당시 D의 재산상태, D과 피고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피고 B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에 대한 악의 추정을 반복하여

선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 B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D과 피고 B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D과 피고 C 사이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각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D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C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김수영

별지